

제25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 합니다.

2016. 4. 14.

임실군의회의회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주요내용

- “소상공인” 용어 정의에 관한 상위법령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안 제2조)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퍼센트)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1)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 원안동의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기타

1) 입법예고 : 생략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4) 관련법령 발췌문
임실군 조례 제 호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7조제2항 중 "1%대의"를 "1퍼센트 대의"로, "4%이내"를 "4퍼센트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를 "5퍼센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p> <p>2. ~ 5. (생략)</p> <p>제7조(이차보전지원) ① (생략)</p> <p>② 이차보전은 지원대상자가 우선하여 연 <u>1%대</u>의 이자율을 부담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최대 <u>4%이내</u>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른다.</p> <p>③ 제2항의 전단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이율이 연 <u>5%</u>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이율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추가 부담한다.</p>	<p>제2조(정의) ----- -----.</p> <p>1. "소상공인"이란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7조(이차보전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1퍼센트</u> 대의 ----- ----- ----- <u>4퍼센트 이내</u>----- ----- -----.</p> <p>③ ----- ----- <u>5퍼</u> <u>센트</u>----- ----- -----.</p>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작성자

지역경제과장 박택수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소상공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⑤ 중소기업청장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